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박 정 · 이훈기 · 김정호
문정복 · 김영환 · 김주영
이용우 · 박해철 · 김태선
황명선 · 이학영 · 장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지열에너지</u>	<u>마. 온도차에너지(지열 · 해수 열 · 하천열 · 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u>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